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
----------	-----

제출년월일 : 1993. 10.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임대주택사업자가 고용자의 신청에 의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므로, 본조례 제정 목적으로 보아 당연히 과세면제하여야 하나
-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이를 과세면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현행 조례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내용을 보완하는 것임

□ 주요골자

동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중 "양도를 하거나"를 "양도(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중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